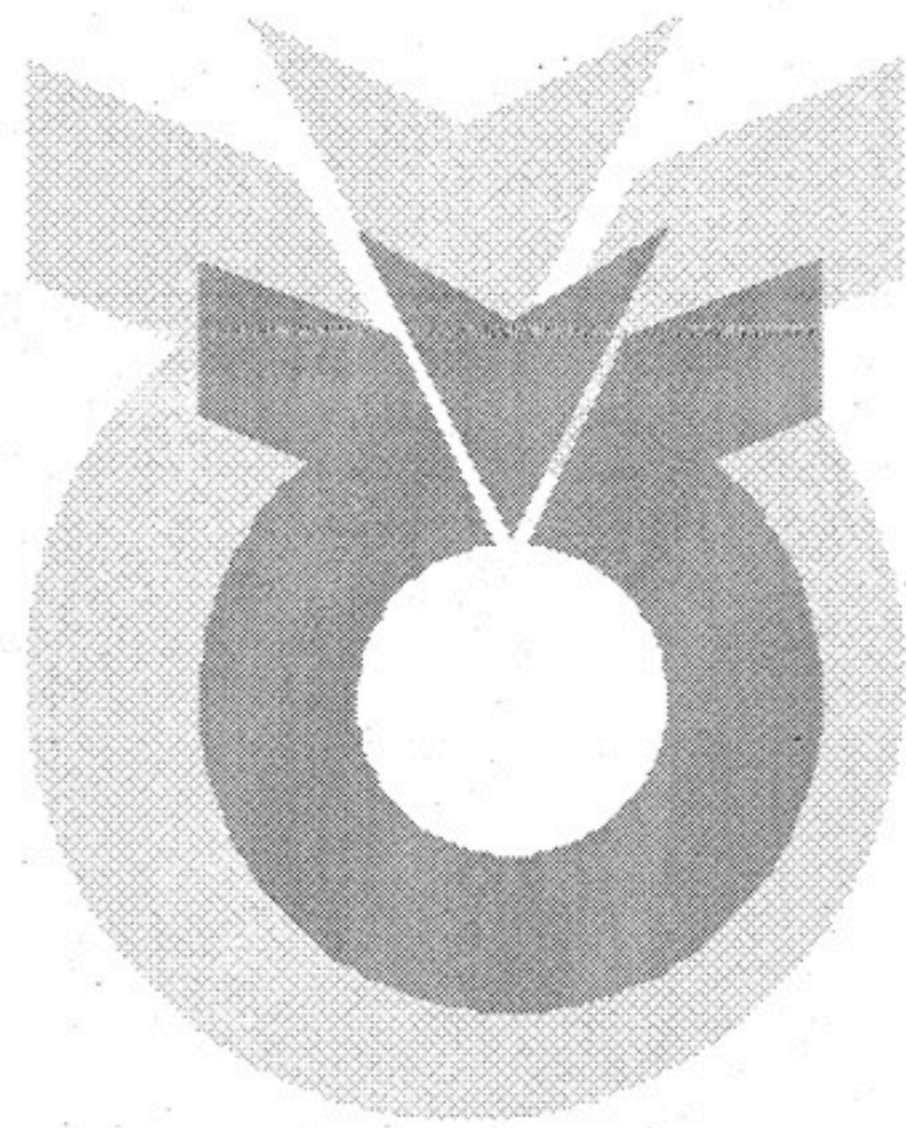


2025. 10. 20.

2025년 제4차 노사협의회

본 문서는 농협의 중요자산입니다



815089

이민*

1630054318

중울산농업협동조합노사협의회

제 2025 - 4 차 노사협의회

의안 제 1 호

1. 건 명 : 여비규정 개정의 건

2. 주요내용

가. 개 요

현행 출장여비의 지급 기준을 물가 및 실비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보상과 업무 효율성 확보

나. 필 요 성

- 1)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현 지급액으로는 실비 보전이 어려움
- 2) 우리농협의 여비가 타 농협 및 농협중앙회 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3) 실비 보전 부족으로 사비 지출 발생 및 출장 기피현상 우려

다. 주요변경 :

변경 전				변경 후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직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1식당)	구분 직급	일 비	숙박비 한 도	식 비 (1식당)
임 원	20,000	70,000	9,000	임 원	25,000	100,000	12,000
M급	15,000	60,000	8,000	M급	25,000	100,000	12,000
3·4급	10,000	50,000	8,000	3·4급	25,000	100,000	12,000
5급이하	10,000	50,000	8,000	5급이하	25,000	100,000	12,000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
단, 70천원 이하의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생략.

3. 의결 주문

제의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함.

제 2025 - 4 차 노사협의회

의안 제 2 호

1. 건 명 : 임금피크직운영규정 개정의 건

2. 주요내용

가. 개 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상향

나. 필 요 성

- 1) 고령화 시대에 숙련 인력의 지속적 활용 필요성 대두
- 2) 규정 개정 전 노사협의를 통한 노사 간 신뢰 강화
- 3)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로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4) 숙련인력의 장기 근무를 통한 조직 내 경험 및 노하우 축적
- 5) 인력 운영 체계 개선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확보

다. 주요변경 :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직무) <u>임금피크직 직원에 대하여는 만57세, 만58세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59세, 만60세는 직무를 변경한다.</u>	제7조(직무) <u>임금피크직 직원에 대하여는 직전의 직무를 유지하며,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u>																					
<별표>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table border="1"> <tr> <td>적용 연령</td> <td>57세</td> <td>58세</td> <td>59세</td> <td>60세</td> </tr> <tr> <td>지급 률</td> <td>100%</td> <td>100%</td> <td>30%</td> <td>30%</td> </tr> </table>	적용 연령	57세	58세	59세	60세	지급 률	100%	100%	30%	30%	<별표>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table border="1"> <tr> <td>적용 연령</td> <td>57세</td> <td>58세</td> <td>59세</td> <td>60세</td> </tr> <tr> <td>지급 률</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able>	적용 연령	57세	58세	59세	60세	지급 률	100%	100%	100%	100%	
적용 연령	57세	58세	59세	60세																		
지급 률	100%	100%	30%	30%																		
적용 연령	57세	58세	59세	60세																		
지급 률	100%	100%	100%	100%																		

3. 의결 주문

제의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함.

제 2025 - 4 차 노사협의회

의안 제 3 호

1. 건 명 : 직원급여규정,업무직직원운용규정,계약직직원운용규정,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2. 주요내용

가. 개 요

대법원의 판례('24.12.19)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요건을 삭제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됨

나. 필 요 성

- 1) 변경된 판례에 맞게 관련된 제규정 제정 및 변경 필요
- 2) 법정 통상임금 범위 확정 후 추가 급여 지급('24.12.19 이후 분)

다. 주요변경

- 1) 법정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법정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여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업무 기본직무급, 업무 직종급, 계약직 월통상임금, 시간제 업무보조원 시간급
성과급여	정기성과급, 업무 정기성과급, 계약직 성과급, 업무보조원 성과급
후생복지비	복지연금(사무소분),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피복·제화대, 명절귀향비, 근로자의 날·가정의 달 격려금, 휴자비, 창립기념품비, 생일축하금, 자기개발비(정액분)

- 2) 휴업 시 급여 기준 변경 (통상임금 → 법정통상임금)
- 3)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단서조항 추가
 - 법정 통상임금의 209분의 1.5배(시간외수당) 또는 1.0배(연차휴가보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준으로 지급

3. 의결 구분

제의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함.